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』

檢 討 報 告 書

2013. 11. 26

行 政 委 員 會
專門委員　金基永

『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』

檢 討 報 告 書

1. 회부경위

○ 청 원 자 :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94 삼호한숲아파트 101동 1104호, 양일승 외 1,818명

○ 소개의원 : 윤준용 의원(사회건설위원회)

○ 접수일자 : 2013. 11. 14(1번)

○ 회부일자 : 2013. 11. 19

2. 청원요지

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 위치인 양평동4가 172-1번지에서 양평동4가 96번지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.

3.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

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청사가 비좁아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,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청원법

5. 검토의견

○ 동 청원은 노후된 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을 요구하는 것임.

□ 청사 신축 추진 개요

○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대지 450㎡에 건물 551㎡ 규모로 1975.12.25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38년여를 사용하고 있음.

동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		준공일자	사용기간
		대 지	건 물	층 수		
양평2동	선유로 53길 23 (양평동4가 172-1호)	450.6	551.13	지하1 / 지상3	1975.12.25	38년째

○ 이에 노후 되고 협소하여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8년 4월에 양평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에 시유지 450㎡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, 인접 사유지 46㎡에 대한 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.

○ 이 과정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민센터 이전이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었고, 매입을 추진중인 사유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었음.

□ 청사 이전여부 결정 추진 경과

○ 동 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양평2동 청사의 이전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, 2012년 8월에는 현 청사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,

○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공영주차장 부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3년 10월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.

□ 공영주차장 부지 개요 및 활용 방안

○ 현 공영주차장 부지는 대지면적 1,804㎡에 주차면수는 75면이나 평면식 주차유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가 제기되고 있으며, 주변 주민은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및 녹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.

동 명	소 재 지	대지 면적	주차면수	유형	소유주
양평2동	양평동4가 96번지	1,804.6㎡	75면	평면식	영등포구

○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청사 신축(안)은 토지이용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시계획 중복(공공청사+주차장)결정하여 건립하는 방안임.

○ 동 청원을 토대로 노후된 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방안을 검토한 결과, 양평2동 청사 운영실태 및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할 때 청사의 신속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, 도시계획 중복결정 방식의 청사 신축방안은 「1)주차장법」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총 시설면적의 40% 이내에서 동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⑥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도시·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**도시·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**